

『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03월 03일

나. 발 의 자 : 이선우, 김낙관, 김재우, 김춘남, 이지연,
장미경, 홍난이 의원(7인)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03월 08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03월 16일

제2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이 선 우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해 시 차원의 보호·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2조)
-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(안 제3~4조)
- 재정지원(안 제5조)
- 교육 및 홍보(안 제6조)
- 협력체제 구축(안 제7~8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
(예상 비용이 연 1억 원 미만으로 추정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03. 04. ~ 03. 11.) 결과 의견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차 병

○ 본 조례안은

-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우리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인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범죄피해자의 고통 경감과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